

	등록번호	20160553	홈페이지 및 이메일
	최초등록일	2016-06-14	http://hello39.co.kr/
	최종등록일	2024-12-03	flow8090@naver.com

헬로베트남 쌀국수

정보공개서

“플로우(FLOW)”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7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4 조 제 1 항에 따라 귀하에게 이 정보공개서를 드립니다.

20 . . .

플로우(FLOW)

“이 정보공개서는 귀하께서 체결하려는 가맹계약 및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번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귀하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정보공개서는 법령이 정한 기재사항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서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어디까지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가맹사업을 운영하게 되므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귀하께서 가맹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부터 그 내용에 구속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기존 가맹점사업자를 방문하여 얻은 정보에 근거하여 가맹본부의 신뢰성을 판단하도록 하십시오. 가맹사업은 법률, 회계,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가맹거래사 등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귀하가 과거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관련 업종에서 경험을 쌓아 경영 수행 능력을 갖추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초기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귀하의 재정상태를 확실히 점검한 다음 창업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백옥대로 1380 번길 6, 3 층 302 호(유방동)

T.



/ F. 031-328-8191

[담당부서: 고기바보 가맹사업부



]



목 차

I. 가맹본부의 일반현황

1. 가맹본부의 일반정보
2. 특수관계인의 일반정보
3. 가맹본부의 인수·합병 여부
4. 가맹희망자가 사용하게 될 영업표지 및 가맹사업의 내용
5. 가맹본부의 재무현황
6. 가맹본부의 임원 명단 및 사업경력
7. 가맹본부의 임직원 수
8.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사실
9. 사용을 허가하는 지식재산권

II.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1. 가맹사업 시작일
2. 가맹사업 연혁
3. 가맹사업 업종
4. 바로 전 3 개년도 말 가맹점 및 직영점 현황
5. 바로 전 3 개년도 말 가맹점수 변동 현황
6. 가맹본부가 경영하거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는 기타 가맹사업 현황
7. 가맹점사업자당 연간 평균 매출액 및 그 산정기준
8.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
9. 가맹지역본부(지사, 지역총판)의 현황
10. 광고·판촉지출 내역
11. 가맹금 예치기관
12. 가맹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내역

III.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1.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2.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3. 형(刑)의 선고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2. 영업 중의 부담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1. 물품 구입 및 임차
2. 거래요구 또는 권장의 대가내역
3.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
4. 영업지역
5. 계약기간, 계약의 갱신, 연장, 종료 및 수정, 해지
6.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양도·상속 및 대리행사 등
7. 경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8. 광고 및 판촉의 조건과 비용 부담 기준
9.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사항
10. 가맹계약 위반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VI. 가맹사업의 영업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1. 가맹점 오픈 절차
2. 분쟁 해결 절차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2.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 내역
3. 경영활동 자문
4. 신용 제공 등 내역
5.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내역

VIII.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1. 교육·훈련의 주요내용
2.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
3. 교육·훈련을 받아야 하는 주체
4. 교육·훈련 불참 시 받을 수 있는 불이익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현황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직영점의 명칭 및 소재지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
3. 준 전체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및 산정기준

정보공개서를 읽기전에

- ◇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귀하가 실제 운영할 사업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히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에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가맹본부측에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가맹거래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검토를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공개서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등록한 정보공개서 (<http://franchise.ftc.go.kr>)를 비교하여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허위·과장된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 (<http://franchise.ftc.go.kr>)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서와 함께 귀하가 창업하려고 하는 점포 예정지 인근 10 곳의 정보(가맹점명, 소재지, 전화번호)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인근 점포를 직접 방문하셔서 가맹본부를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가맹본부와 상담하기 전 창업희망자가 알아야 할 10 가지 필수사항을 확인하시고 가맹사업법 관련 조항도 찾아보십시오.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 가맹본부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정보공개서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를 계약서와 함께 잘 보관하십시오.
- ◇ 참고로,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신청하여 공정위 등에서 심사 중인 경우에는 실제 내용과 본 정보공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으시면 가맹본부에게 변경등록 신청여부 및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 반드시 확인받으시고, 필요할 경우 추후 변경등록이 완료될 경우 변경된 정보공개서의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정 보 공 개 사 항

I. 가맹본부의 일반현황

1. 가맹본부의 일반정보

당사의 회사설립 및 사업자등록에 관한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호	영업표지		주 소	
플로우 (FLOW)	“헬로베톼남 쌀국수”외 2 개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백옥대로 1380 번길 6, 3 층 302 호(유방동)	
	법인 설립등기일	사업자 등록일	대표자	전화번호 및 팩스
	개인사업자	2024.10.02	이민용	T.  (비공개) F. 031-328-8191
	법인등록번호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번호	877-78-00578

2.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

당사의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에 관하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 가맹본부의 인수·합병내역

인수·합병 여부	기업명	브랜드	인수·합병일	주소	대표자
가맹본부가 다른 기업을 인수함	해당없음				
가맹본부가 다른 기업의 가맹사업 일부를 인수함	디티푸드	고기바보	2024.10.01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149번길 32, 1 층(하동)	이종성
		헬로베톼남 쌀국수			
		훗스테이크			
다른 기업에 가맹사업 일부를 인도함					

다른 기업이 가맹본
부를 합병함

4. 가맹희망자가 사용하게 될 영업표지에 관한 사항

귀하는 앞으로 아래 표에 따른 가맹사업을 경영하게 됩니다.

구 분	내 용	추가 설명
명 칭	헬로베트남 쌀국수	없 음
상 호	헬로베트남 쌀국수 OO 점	없 음
상표 (서비스표)		등록원번호(일자) 4104001910000 (2017.07.19)
그 밖의 영업표지	-	

5. 가맹본부의 재무현황

1) 당사의 최근 3년 동안의 재무현황 요약

당사의 정보공개 바로 전 3년 동안의 매출액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연도	총자산	총부채	총자본	매출액	영업 이익	당기 순이익
2021	-	-	-	-	-	-
2022	-	-	-	-	-	-
2023	-	-	-	-	-	-

▶ 당사는 2024년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2) 당사의 최근 3년 동안의 가맹사업관련 매출액

당사의 바로 전 3년 동안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은 1)의 매출액과 같습니다

6. 가맹본부의 임원명단 및 사업경력

당사의 임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 여부	이름	현 직위	사업경력		
			기간	사업체명	담당 업무
가맹사업 관련임원	이민용	대표	2024.10.02 ~ 현재	플로우(FLOW)	가맹사업총괄

7. 가맹본부의 임직원수

당사의 정보공개서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 점	임원수(명)		직원수(명)
	상근	비상근	
2023 년 12 월 31 일	-	-	-

▶ 당사는 2024 년 사업을 시작하여 직전연도 직원이 없습니다.

8.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 사실

당사 및 당사의 특수관계인이 정보공개 바로 전 3 년 동안 『헬로베트남 쌀국수』 가맹 사업외 다음과 같은 가맹사업을 경영하였거나 경영하고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관계	상호	영업표지	정보공개서 등록번호	기간	사업내용
가맹 본부	플로우 (FLOW)	고기바보	20171015	2024.10.01 ~ 현재	소고기 무한리필 가맹사업
		훗스테이크	20190251	2024.10.01 ~ 현재	스테이크 가맹사업

9. 사용을 허가하는 지식재산권

귀하가 당사의 『헬로베트남 쌀국수』 가맹점으로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에 귀하에게 부여하는 지식재산권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명칭	권리내용	등록 및 등록신청 여부(일자)	출원번호 및 등록번호	소유자 (등록신 청자)	존속기간 만료일 (사용기간)
----	------	------------------------	----------------	--------------------	-----------------------

	간판, 인테리어 시설물 및 판촉, 홍보	출원일 2016.04.26 등록일 2017.07.19	출원번호 4120160019376 등록번호 4104001910000	이종성	2027.07.19
---	--------------------------------	--	--	-----	------------

- 당사는 2024.10.01 자로 헬로베트남 쌀국수를 인수하여 소유권 이전등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귀하가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당사의 상표(특허)를 사용할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 당사의 지식재산권 내용은 한국특허정보원 특허정보검색서비스 (<http://www.kipr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II.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1. 가맹사업 시작일

『헬로베트남 쌀국수』의 가맹사업시작일은 2016년 6월 19일입니다.

2. 가맹사업 연혁

『헬로베트남 쌀국수』에 대한 가맹사업 연혁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맹본부 상호	영업표지	대표자	가맹사업 경영기간	주된 사무소 소재지
디티푸드	헬로베트남 쌀국수	이종성	16.06.19 ~ 2024.09.30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149번길 32, 1층(하동)
플로우(FLOW)	헬로베트남 쌀국수	이민용	2024.10.01 ~ 현재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백옥대 로 1380번길 6, 3층 302호(유 방동)

3. 가맹사업 업종

『헬로베트남 쌀국수』에 대한 가맹사업 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표지	업종	
	대분류	소분류(주요상품)
헬로베트남 쌀국수	기타 외국식	쌀국수, 베트남볶음면, 짜조

4. 바로 전 3개년도 말 가맹점 및 직영점 현황

정보공개 바로 전 3개 사업연도 말 현재 영업중인 『헬로베트남 쌀국수』의 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 수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개)

지역	2021.12.31			2022.12.31			2023.12.31		
	전체	가맹 점수	직영 점수	전체	가맹 점수	직영 점수	전체	가맹 점수	직영 점수
전체	14	14	-	9	9	-	9	9	-
서울	3	3	-	1	1	-	-	-	-
부산	-	-	-	-	-	-	-	-	-

대구	-	-	-	-	-	-	-	-	-
인천	-	-	-	-	-	-	-	-	-
광주	-	-	-	-	-	-	-	-	-
대전	1	1	-	1	1	-	2	2	-
울산	-	-	-	-	-	-	-	-	-
세종	-	-	-	-	-	-	-	-	-
경기	4	4	-	1	1	-	1	1	-
강원	2	2	-	2	2	-	2	2	-
충북	-	-	-	-	-	-	-	-	-
충남	-	-	-	-	-	-	-	-	-
전북	1	1	-	1	1	-	1	1	-
전남	-	-	-	-	-	-	-	-	-
경북	-	-	-	-	-	-	-	-	-
경남	3	3	-	3	3	-	3	3	-
제주	-	-	-	-	-	-	-	-	-

5. 바로 전 3개년도 말 『헬로베트남 쌀국수』의 가맹점수 변동 현황

정보공개 바로 전 3개 사업연도 말 가맹점수 변동현황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개)

연도	연초	신규 개점	계약 종료	계약 해지	명의 변경	연말
2021	14	2	0	2	0	14
2022	14	2	7	0	0	9
2023	9	2	0	2	1	9

6. 가맹본부가 경영하거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는 기타 가맹사업 현황

당사는 『헬로베트남 쌀국수』 가맹사업 외 현재 당사 및 당사의 특수관계인이 운영하는 기타 가맹사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 영업표지 포함)

가맹 본부	영업 표지	정보공개서 등록번호	업종	가맹점/직영점의 수 (단위: 개)		
				2021 년말	2022 년말	2023 년말

플로우(FLOW)	고기바보	20171015	소고기 무한리필	1/0	0/0	1/0
	훗스테이크	20190251	스테이크 전문점	15/0	17/0	20/0

7.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과 지역별 연간평균매출액 및 그 산정기준

가맹점사업자 한 명이 직전 사업연도(2023 년)에 연간평균으로 올린 매출액 및 지역별 매출액은 아래와 같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보다 정확한 금액은 매출액 표의 상한과 하한 금액 사이에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역	가맹점 수	2023년 연평균 매출액(단위:천원, VAT미포함)						비고
		연평균 매출액		상한 매출액		하한 매출액		
		연평균	3.3㎡당	상한	3.3㎡당	하한	3.3㎡당	
전체	9	96,956	7,144	258,078	23,461	36,000	2,800	7곳 산정
서울	-	-	-	-	-	-	-	-
부산	-	-	-	-	-	-	-	-
대구	-	-	-	-	-	-	-	-
인천	-	-	-	-	-	-	-	-
광주	-	-	-	-	-	-	-	-
대전	2	-	-	-	-	-	-	5 곳미만
울산	-	-	-	-	-	-	-	-
세종	-	-	-	-	-	-	-	-
경기	1	-	-	-	-	-	-	5 곳미만
강원	2	-	-	-	-	-	-	5 곳미만
충북	-	-	-	-	-	-	-	-
충남	-	-	-	-	-	-	-	-
전북	1	-	-	-	-	-	-	5 곳미만
전남	-	-	-	-	-	-	-	-
경북	-	-	-	-	-	-	-	-
경남	3	-	-	-	-	-	-	5 곳미만
제주	-	-	-	-	-	-	-	-

- 당사의 POS 매출액을 기준으로 7개의 가맹점을 1년으로 환산하여 계산하였습니다.
- 매출액은 가맹점사업자별로 물품 공급액, 사업의 정도, 가맹점사업자의 매장 운영 방법, 시장상황, 가맹점사업자의 노력 등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표에 나타난 매출액이 귀하가 올릴 수 있는 미래 수입과 같지 않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8.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

『헬로베트남 쌀국수』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영업중인 가맹점사업자의 평균 영업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	영업중인 가맹점 수	평균 영업기간
2023	9 개	1,092 일

9. 가맹지역본부(지사, 지역총판)의 현황

당사는 가맹지역본부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10. 광고·판촉 지출 내역

당사는 정보공개일 직전 사업연도의 『헬로베트남 쌀국수』 가맹사업 관련 연간광고 및 판촉비 내역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 부가세미포함)

구분	수단	기간	지출 비용 (단위: 천원)			비고
			합계	가맹본부	가맹점	
광고	온라인 광고 등	2023.1~12	-	-	-	광고선전비

- 당사는 2024.10.01 자로 헬로베트남 쌀국수를 인수하여 광고 및 판촉비에 사용한 금액이 없습니다.

11. 가맹금 예치기관 - 신한은행

귀하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가맹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신한은행에 예치하여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치기관	담당 부서	주소	전화번호
신한은행	용인금융센터	경기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360	031-336-2031

자세한 예치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귀하는 가맹금 예치금액을 당사에서 교부한 예치신청서를 작성하여 가맹계약후 다음날 까지 예치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가까운 신한은행을 방문하시어 예치가맹금을 담당직원의 안내에 따라 신한은행장 명의로 입금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예치방법은 신한은행 인터넷 홈페이지(www.shinhan.com)에 접속하거나 문의 전화(1599-8000)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귀하는 또한 국민은행에서 발급한 예치증서를 보관하고 있어야 하며 아래 주의사항을 반드시 알아 두어야 합니다.

가맹금 예치와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알아두어야 할 사항
1.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시작하거나 가맹계약 체결일부터 2 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이 가맹예치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됩니다. 2.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가맹금의 지급이 보류됩니다. 가.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나.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알선, 조정, 중재 등을 신청한 경우 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 반환 사유가 발생하여 가맹본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경우 3. 2 번의 가~다의 조치를 취한 경우 그 사실을 예치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예치가맹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

12.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 내역

당사는 가맹금 예치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므로 피해보상보험제도를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피해보상보험제도와 관련하여 당사의 운영방침이 변경된 경우 정보공개서를 통해 이를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III.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1.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의 시정조치 등

당사 및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바로 전 3 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시정조치 등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2.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당사 및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바로 전 3 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와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3. 형(刑)의 선고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바로 전 3 년 동안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 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귀하가 『헬로베트남 쌀국수』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비용을 가맹본부 또는 다른업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 금액에는 귀하 지불하여야 하는 점포의 임대비용 등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운영하게 될 점포의 위치 및 규모, 내부 설비의 종류, 영업 시작까지 걸리는 시간 등이 상이하므로 실제 지불하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귀하가 부담하여야 할 대가는 매우 다양하나 크게 다음의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분	지급 대상	예치 대상 여부	비고
최초 가맹금	가맹본부	예치	확정 금액
보증금	가맹본부	해당없음	
기타 비용	가맹본부 또는 협력 업체	예치하지 않음	추정 금액

1) 최초 가맹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금액	지급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가맹비	₩5,500	계약 체결일	영업 개시 이전까지 계약 해지	가맹점 모집을 위하여 소요되 는 소멸성비용	반환시 당사에 서 정한 위약 금을 공제
교육비	₩2,200	계약 체결일	교육 개시 이전 계약 해지	교육이 시작되면 반환되지 않음	개점전 교육비

- 개점행사비와 관련하여 당사는 오픈행사 없이 영업을 시작하며 오픈행사를 희망하시는 가맹점주님께서서는 각자의 부담으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2) 보증금, 담보목적물 등

당사에서는 현재 보증금을 받지 않습니다. 보증금과 관련하여 당사의 운영방침이 변경된 경우 정보공개서를 통해 알리고 재계약 시점부터 변경된 보증금에 관한 부분이 적용됩니다.

3) 예치가맹금의 범위와 그 금액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귀하가 예치하여야 하는 가맹금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예치가맹금액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합계	₩7,700
가맹비	₩5,500
교육비	₩2,200
개점행사비	해당없음
이행보증금	해당없음

4) 귀하가 그 밖에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 및 금전 지급방법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다만, 기존 가맹점 양수인의 경우에는 일시불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경기도 Gyeonggi-do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	--

간판, 인테리어 등 기타 비용 (기준: 66㎡ (20평) / 단위: 천원, VAT포함)					
구분	지급 대상	총 금 액	3.3 ㎡당 금 액	지급 기한	반환 조건
[총 계]	-	[53,350]		-	-

간판	협력업체	4,950		-	-
인테리어 (실내)	업체자율 (요청시)	30,800	[1,540]	시공업체와 협의결정	시공업체와 협의결정
주방 기물	지정업체 IV-1-7.참조	13,750	[687]	시공업체와 협의결정	시공업체와 협의결정
초도물품	IV-1-7) 참조	2,200		공급업체와 협의결정	공급업체와 협의결정
POS 설비	업체자율	1,650		계약시 협의결정	물품발주전계 약해지시

- 위 표의 금액은 당사가 그 동안의 가맹점 운영 경험을 토대로 추정한 것으로 실제 지불 금액과는 다를 수 있으며 매장규모 및 물가인상, 디자인의 변동 등 사정에 따라 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간판은 매장규모에 따라 그 비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인테리어 3.3㎡ 당 가격은 대략 154 만원(부가세포함)으로 책정되었으며 매장규모에 따라 그 비용이 달라집니다.
- 주방설비는 면적과 상관없이 최소기본설비가 필요하므로 상기 기재된 평당 단가와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귀하는 간판 및 인테리어에 관하여 귀하가 직접 시공할 수 있으나, 이의 경우 가맹사업 전체의 통일성과 독창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귀하는 당사가 파견하는 직원의 감리(관리감독)를 받아야 하며, 당사에 **3.3㎡당 33 만원(부가세포함)의 비용**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업체에게 공사를 의뢰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각종 인허가, 인터넷 및 전화개설, 기존 시설물 철거 및 정화조공사, 전면유리 및 샷시공사, 어닝, 소방공사, 상하수도공사, 냉난방공사, 가스공사, 전기승압공사, 외부닥트공사, 화장실 등은 별도로 실비를 추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 초도물품과 관련하여 초도 발주물량에 따라 그 비용이 달라 질 수 있습니다.

5) 가맹계약 체결 및 당사 금전 지급 후 해약 시 위약금

귀하가 당사에 금전을 지급하거나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후(둘 중 빠른 시점) 일방적인 변심등 귀하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가맹점 개점 전 해약을 하고자 하는 경우 귀하가 당사에 지급한 금액 중 반환하여야 할 금액에 대해서는 다음의 위약금 규정에 따라 상계처리 후 반환됩니다.

해약 요청 일자	위약금
계약 체결 또는 금전 지급 후 24 시간 이내	100 만원
계약 체결 또는 금전 지급 후 24 시간 이후 10 일 이내	200 만원
계약 체결 후 10 일 이후 가맹점 오픈 이전	300 만원
개정 관련 발생하는 인테리어, 설비공사비용 등	실제 발생비용 전액

6) 가맹점 입지 선정 주체 및 선정 기준

당사는 신규 가맹점 입지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선정 주체	입지 선정의 기준
가맹점사업자	1) 가맹점사업자가 자신의 책임 하에 점포의 입지를 선정합니다. 2) 가맹점사업자의 입지선정에 당사는 해당 지역의 행정구역상의 구분, 시장의 특성, 주요한 근린시설, 업종특성에 따른 매출성향 등을 고려하여 해당 점포의 실사를 통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조언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가 조언한 경우라도 최종 의사결정권은 가맹점사업자에게 있습니다.

7) 가맹점사업자와 그 종업원의 교육 및 계약·채용 기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교육을 받거나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에 종업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교육 기준	계약·채용 기준
가맹점사업자	국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을 것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이 아닐 것 만 20 세 이상일 것 위생교육 수료자, 보건증 소지자일 것
종업원	특별한 기준 없음	만 18 세 이상일 것 보건증 소지자일 것

- 귀하는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령에 위반하여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자나 건강진단 결과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다고 인정된 자를 가맹점운영에 종사시켜서는 아니 됩니다. 이를 위반하여 적발될 경우, 관할 관청으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등의 내역 및 공급방법·공급업체,

『헬로베트남 쌀국수』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물품이 필요합니다.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 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9) 귀하가 당사에 가맹금을 한번에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계약체결시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2. 영업 중의 부담

1) 비용부담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여 가맹점 오픈 이후 지급해야 하는 정기 또는 부 정기 지급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 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지급 대상	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 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로열티	가맹본부	해당없음				
영업표지변경에 따른 간판변경비	협력업체	교체보수 필요시 협의	시공업체와 협의	시공업체와 협의	시공업체와 협의	부득이한 경우 변경
점포환경 개선	협력업체	가맹본부 부담비용을	VII.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중 1.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참조			

	/업체자율	제외한 나머지				
개점이후 교육비	가맹본부	기본교육 무료, 특수사항 실비	교육실시 7 일전까지	교육실시 3 일전 취소	교육후 반환되지않 음	수시교육
		개별교육에 따라 가맹점주와 협의 산정	교육실시 7 일전까지	교육 실시 1 일전 취소	교육후 반환되지 않음	특별 교육
광고, 판촉 분담금	가맹본부	자세한 내용은 (V-8-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광고실시후 반환불가	-
지연이자	가맹본부	연 20%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	-	금전지급 의무의 지급기한 경과시 부담.
POS 월사용료	업체자율	매월 [20~40]	지정업체와 협의	해당사항 없음	사용 대가 지급	사용량에 따라 변동됨.

- 리스료, 재고관리비용, 회계처리비용, 영업지역보장금등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광고판촉분담비에 관하여는 “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중 9. 광고 및 판촉의 조건과 비용 분담 기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점포환경개선과 관련한 가맹본부의 분담비율에 관하여는 “VII.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중 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구입요구 품목 구입을 통한 가맹금 지급

가맹점사업자가 필수품목(강제, 권장)의 거래를 통해 당사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이하 “차액가맹금”이라 한다)에 대한 정보공개 바로 전 사업연도 기준의 평균 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내 용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	해당없음
가맹점당 평균매출액 대비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의 비율	해당없음

- 당사는 2024.10.01 자로 헬로베트남 쌀국수를 인수하였습니다.

3)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감독

당사는 귀하의 영업 상황에 대하여 일정한 감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감독 항목	내 용	시 기	비 고
재고관리 등	가맹점사업자의 가맹점운영 상태 및 취급품목, 실재재고수량조사, 공급품의 보관상태 등	부정기	문의  (비공개)
회계처리	영업장부 및 회계자료의 작성유지 여부, 연매출액에 대한 자료요청 및 매출누락에 대한 회계조사 실시	1 년 1 회이 상 및 요청시	문의  (비공개)

-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점포 경영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부정기적으로 당사의 직원을 통하여 당사가 정한 규정 이외의 품목 취급 여부, 공급품의 보관상태 등 매장 운영 전반에 대하여 점검 및 지도, 관리, 감독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매장의 점검 및 확인을 위하여 가맹점사업자는 당사의 직원이 점포에 출입하는 것을 허용하여야 합니다.
- 귀하는 가맹점 영업과 관련하여 영업 장부와 회계자료를 성실히 작성·유지하여야 하며, 당사가 가맹사업의 통일적 사업경영 및 판매전략의 수립과 ‘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당사가 정보공개서 작성을 위해 귀하의 연 매출액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제공하여야 합니다.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

1) 계약연장이나 재계약 과정의 추가 부담

귀하가 당사와 계약이 종료된 후에 연장(갱신, 재계약을 포함한다)하기 위해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은 없습니다.

2) 가맹본부의 사정에 의해 계약종료시 조치사항

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존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승계 여부

당사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양수한 사업자와 가맹계약을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새로운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없으면 기존 가맹계약을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때 당사가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수령한 가맹금 중 이행 의무가 남아 있는 부분이 있을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계약 해지와 함께 당사의 귀책 정도에 따라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맹금 반환청구는 최초계약에 한합니다.

나)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락한 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가 가맹점운동을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용을 허가한 상표권,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이 존속기간의 만료, 소유권(사용권) 변경, 효력 상실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지식재산권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사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며, 당사가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지 못하거나 대체수단이 만족스럽지 못 할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는 체결한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귀책사유 등을 감안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맹금 반환청구는 최초계약에 한합니다.

다)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는 원칙적으로 모든 가맹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가맹사업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당사가 가맹사업을 중단하게 될 경우에는 이를 미리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하고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것입니다. 이 경우 계약이행기간, 계약해지의 귀책사유 등을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맹금 반환청구는 최초계약에 한합니다.

3) 가맹점 운영권 양도 과정의 부담

가맹점사업자가 잔여 계약기간에 대한 가맹점운영권을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 양수인은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교육을 받아야 하며, **교육비 (이행보증금은 없음)**를 당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양수인이 완전한 계약기간의 신규가맹계약 체결을 원할 경우에는 **가맹비와 교육비 (이행보증금은 없음)**를 당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4) 계약 종료 후의 조치 사항

가맹점사업자는 당사와 『헬로베트남 쌀국수』 가맹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는 당사로부터 부여받았던 가맹점운영권이 만료되며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① 당사로부터 사용 허가를 받은 『헬로베트남 쌀국수』 가맹사업과 관련된 영업표지 등의 사용을 지체없이 중단하여야 하며, 사용허가를 얻어 사용하던 상호, 간판, 기

타 표시물 등을 계약해지 및 종료후 10일 이내 철거하여야 합니다. 또한, 가맹점운영에 관한 관계서류와 지원품목등을 반환 또는 폐기하여야 합니다. 이때 철거 비용은 계약의 종료 또는 해지가 당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종료되는 경우 외에는 귀하께서 부담하여야 합니다.

- ② 전항의 내용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에게 일정한 금액의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③ 가맹점사업자가 당사로부터 공급받은 물품을 반품하고자 하는 경우, 당사의 공급물품의 특성상 유통기간 및 부패, 오·훼손 등의 문제로 인하여 반품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당사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최근 2개월 이내에 공급된 상품으로서 재판매가 가능한 완전물에 한하여 당사에 반품요구를 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당사와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귀하는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영업활동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재된 내용을 신중히 살펴본 후 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할 것을 권장합니다.

1. 물품 구입 및 임차

- 1) 귀하가 『헬로베트남 쌀국수』 가맹사업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동산 · 용역 · 설비 · 상품 · 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하는 자와 거래해야 할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물품 구입 및 임차 현황

	이 항목은 개인정보 · 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 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	---

나) 주요품목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 · 하한

순번	품목(단위)	공급가격		구분
		상한	하한	
1	해당없음			

▶ 당사는 2024.10.01 자로 헬로베트남 쌀국수를 인수하였습니다.

2)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

귀하가 『헬로베트남 쌀국수』를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당사가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부동산 · 용역 · 설비 · 상품 · 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직전년도 당사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 거래요구 또는 권장의 대가내역

1) 강제 또는 권장의 대가로 수취하는 경제적 이익

당사는 『헬로베트남 쌀국수』 가맹점사업자에게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 거래상대방과 거래하도록 강제 또는 권장하는 대가로 특정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직전연도 수취한 경제적 이익은 없습니다.

2) 특수관계인이 강제하는 특정거래상대방으로부터 수취하는 경제적 이익

당사는 『헬로베트남 쌀국수』 가맹사업에 있어 특수관계인에 의해 거래를 강제하는 특정거래상대방이 없습니다. 따라서, 특수관계인이 직전연도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수취하는 경제적 이익에 관하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

1)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상품·용역만을 판매하여야 하며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시 책임	비고
가맹본부 제공상품 일체 - 하단 3) “상품품목 및 권장가격” 참조	왼쪽에 기재된 이외의 제품을 판매할 수 없음	1 회 위반: 구두 경고 2 회 위반: 서면시정요구 후 가맹점운영권제한 3 회 이상 위반: 계약 해지	당사로부터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외

- 귀하가 승인되지 않은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를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2) 거래상대방(고객)에 따른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고객에 대해 상품, 용역을 판매하지 않아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거래상대방(고객)	상품·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시 책임	비고
“헬로베트남 쌀국수”의 타 가맹점	당사로부터 공급받는 모든 물품	거래상대방별로 원쪽에 기재된 제품은 판매할 수 없음	1 회 위반: 구두 경고	당사로부터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외
당사와 경쟁관계에 있는 자			2 회 위반: 서면 시정 요구 후 가맹점운영권 제한 3 회 위반: 계약 해지	

3)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제한

당사는 시장상황이나 소비자의 동향 또는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가장 적절하고 합리적이라고 생각되는 소비자 판매가를 정하여 권장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 · 용역명	권장가격 (단위: 원)	가격 통보 방법	비고
소고기쌀국수	3,900 원	서면이나 전자우편 또는 팩스통지, 홈페이지 공지 등	2021. 5 월 기준 (계절 및 지역적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탄탄쌀국수	5,400원		
베트남볶음면	4,900원		
베트남볶음밥	4,900원		
분짜	6,900원		
새우완탕쌀국수	4,500원		
베이컨볶음면	5,400 원		
베이컨볶음밥	5,400 원		
고기덮밥	5,400 원		
탄탄밥	5,400 원		

짜조	3,900 원		
모듬딤섬	5,900 원		
모듬튀김	3,900 원		
버팔로wing&봉	3,900 원		
불고기덮밥	4,900 원		
냉쌀국수	4,900 원		
비빔쌀국수	4,900 원		

-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권장 가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사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고 당사와 사전협의의 하여야 합니다.

4. 영업지역

1) 독점적·배타적 영업지역 설정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12 조의 4 에 의거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을 명시하고 있으며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는 가맹계약기간 중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가맹점을 추가 개설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업종의 범위 및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의 영업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일한 업종 범위	동일한 업종 영업표지	
	가맹본부	계열회사
베트남 쌀국수 전문점	헬로베트남 쌀국수	해당없음

- 당사 및 당사의 가맹사업법 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계열회사는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헬로베트남 쌀국수』를 추가 설치하지 않으며, 향후에도 동일업종의 영업표지를 가진 가맹점 및 직영점을 설치하지 않습니다.

2) 영업지역의 설정 기준

당사는 영업지역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설정 기준	설정방법
상권에 따라 상이하나 영업거점 주소지로부터 동선거리 500 m 의 범위를 원칙으로 함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 (지도별첨을 원칙으로 함)

- 다만, 영업지역내 대형할인매장, 백화점, 대형마트, 지하상가, 공항, 호텔, 종합병원 등은 특수상권으로서 별도의 영업지역으로 본다.

3)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영업지역을 재조정할 수 있는 사유 및 절차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12 조의 4 에 의거 가맹계약 갱신시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서 가맹점사업자와 합의를 통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지역 재조정 사유	재조정 절차 / 동의를 얻는 방법
① 재건축, 재개발, 신도시 건설 등 대규모개발로 인하여 상권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② 해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유동인구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③ 소비자의 기호변화 등으로 인하여 해당 상품·용역에 대한 수요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④ 위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영업지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조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영업지역 조정통보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통지 → 가맹점사업자의 합의 → 영업지역 변경 완료(신규 점포 입점 가능)

4) 영업지역 밖의 고객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데에 따르는 제한

당사는 가맹점사업자가 자신의 영업지역을 벗어나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에 속한 고객에게 영업활동을 하는데 대하여 별다른 제한을 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가맹본부는 다음의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 ①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의 고객과 거래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두 가맹점사업자 간의 보상금 지불에 대한 중재안을 제시하는 행위
- ② 영업지역을 침해받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정 조정 요구가 있는 경우 매출액 현황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행위

- ③ 특정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반복적으로 침해하여 『헬로베트남 쌀국수』 브랜드 이미지에 심각한 손해를 가한 경우 그 가맹점사업자에 게 행위의 시정을 요구하고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행위

- 5)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내의 대리점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헬로베트남 쌀국수』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서 대리점, 다른 영업표지를 사용한 가맹점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 6)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 7) 그 밖에 영업지역에 관한 내용
그 밖에 영업지역에 관한 내용은 없습니다.

5. 가맹본부의 온라인·오프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연간 국내 매출액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출액 비중

연도	국내 온라인·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온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가맹점	기타 오프라인	자사 온라인몰	기타 온라인
2023 년	100%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국내 판매상품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전용 판매상품 비중

연도	오프라인(가맹점) 전용상품 비중	온라인 전용상품 비중
2023 년	100%	해당없음

6. 계약기간, 계약의 갱신·연장·종료 및 수정, 해지

1) 가맹계약의 기간

『헬로베트남 쌀국수』 계약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이며 갱신시에는 2년씩 연장됩니다.

2)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 또는 계약 종료에 필요한 절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13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4 조에 따라 귀하에게는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최초 계약일로부터 10년간 주어집니다. 다만 당사에게 정당한 사유(갱신거절 사유)가 있는 경우 재계약 또는 계약 연장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순 서	기간 (계약만료일: D-day)
①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하였습니까? 예→②, 아니오→⑦	D-180 ~ D-90
② 3)에서 정한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합니까? 예→④, 아니오→③	D-180 ~ D-90
③ 가맹본부가 계약조건 변경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⑤, 아니오→A	D-180 ~ D-90
④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거절 사유를 기재하여 서면으로 거절 통지를 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A	① +15일 이내
⑤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조건 변경에 동의하였습니까? 예→C, 아니오→⑥	
⑥ 변경된 계약조건이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 되는 계약조건입니까? 예→B, 아니오→D	
⑦ 가맹본부가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 하였습니까?	D-180 ~ D-90

예→B, 아니오→⑧	
⑧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 또는 계약조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습니까? 예→E, 아니오→A	D-60일 이전
A.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B.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계약 종료	D-day
C.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D.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조건을 바꾸어야 함. (가맹본부가 계약 변경을 강행할 경우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E.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을 만료하거나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민사상 문제로 가맹사업법에서 특별하게 제한하는 규정 없음)	

3) 계약 갱신 거절 사유

당사가 가맹계약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가맹점사업자가 다음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거나 조건을 수락하지 않을 경우입니다.

갱신요구 거절 사유	관련 계약조문
당사 또는 협력업체에 지급하여야 할 가맹금 등 미지급 채무의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하는 경우	7조 2항 각호1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귀하가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점포·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면허·허가의 취득을 하지 못한 경우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공법 또는 서비스기법을 지키지 않은 경우	
경영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침을 지키지 않은 경우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다만, 교육·훈련 비용이 같은 업종의 다른 가맹본부가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비용보다 뚜렷하게 높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4) 계약종료, 해지 사유 및 그 절차

가. 당사는 아래와 같은 계약 해지 사유 발생 시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사실 및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2회 이상 통지 후 이에 대한 가맹점사업자의 시정이 없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가맹점사업자가 점포의 규모, 대표자 등의 가맹점의 표시에 해당하는 사항을 임의로 변경하는 경우	3 조 3 항	25 조 각호 및 31 조 1 항 2 호
가맹점사업자가 당사가 허용한 영업표지의 사용범위 외에 서면 동의 없이 영업표지를 사용하는 경우	4 조 3 항	
가맹점사업자가 당사가 보유한 영업표지를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양도한 경우	4 조 4 항	
가맹점사업자가 로열티 및 공급품 대금의 납입을 3 회 이상 연체한 경우	15 조	
가맹점사업자가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17 조	
가맹점사업자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제 3 자의 명의로 경업금지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18 조	
가맹점사업자가 관리감독 기준에 의한 시정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시정하지 않는 경우.	20 조 1 항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은 상품에 대하여 가맹점 판매 용도 이외로 사용할 경우	22 조 6 항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승인받지 않고서 요구 품목을 자점매입하거나 사입여부 확인을 위한 품질검사를 2 회이상 응하지 않는 경우	23 조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승인 없이 가맹점 설비를 임의적으로 변경하는 경우	27 조 6 항	
가맹점사업자가 공동으로 시행되는 광고·판촉의 광고·판촉비 분담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는 경우	29 조,30 조	
가맹점사업자가 사전 승인 없이 양도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나, 사전 승인 없이 점포를 다른 장소로 이전하여 영업을 하는 경우	35 조 3 항	
기타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과 관련하여 가맹본부에 지불할 대금지급이 지급기일까지 미이행된 경우	25 조 13	
기타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 내용을 위반하여 가맹본부의 명성에 악영향을 미치거나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저해할 경우	25 조 14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3 개월 이상 개점이 지연되거나 최초 개설 비용의 지급을 지키지 않는 경우	31 조 1 항 2 호	

A. 당사는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할 경우 해지절차 없이 즉시해지를 할수 있습니다.

즉시 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법원 판결을 받음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가.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 나.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과태료 등 부과처분 다.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면허·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15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정한 날부터 1년(계약갱신이나 재계약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기간에 속한 기간을 합산한다)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다만, 가맹본부가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다시 같은 사항을 1년 이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는 제외한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뚜렷이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청의 시정조치를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31조 4항 각호1

B. 당사 및 가맹점사업자는 아래와 같은 사유 발생 시 즉시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즉시 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당사 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당사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 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불정지된 경우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당사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31 조 3 항 각호 1

라. 가맹점사업자는 아래와 같은 사유 발생 시 그 사실을 당사에 통지하고 2 개월이 지나도 시정되지 않으면 가맹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당사가 가맹점운영에 필요한 공급품에 대하여 부당하게 공급을 거절하는 경우	31조 2항 각호1

마. 그밖에 가맹점사업자가 위에 해당하는 해지사유 이외에 해지를 하고자 하는 경우 최소 2개월 전에 해지 의사 표시를 서면으로 요청 후 양 당사자가 합의하여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가맹본부의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5) 계약 수정의 사유, 사전 통보 여부 및 동의 절차

당사는 계약기간 중에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당사와 귀하의 서면합의를 거쳐 계약내용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재조정 절차	동의절차
계약 수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수정계약서(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 동의 → 수정 완료	수정 계약서(안)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15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 동의를 있는 경우 수정계약서에 정한 날부터 효력발생

7.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 양도 · 상속 및 대리행사 등

1)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당사는 가맹점운영권 환매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2) 가맹점운영권의 양도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사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이 있어야만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 가능 조건	양도 절차	비고
----------	-------	----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할 것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정보공개서 제 공 → 당사 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15일가량 소 요)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도 계약체결 (1개월 이내)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문의:  (비공개)
------------------------------------	--	--

- 양수인은 반드시 교육을 받아야 하며, 당사에 교육비 (이행보증금은 없음)를 지급하
여야 합니다. 다만, 양수인이 신규가맹계약 체결을 원할 경우에는 가맹비와 교육비(이
행보증금은 없음)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3) 가맹점운영권의 상속, 대리행사, 위탁 등

가맹점운영권은 원칙적으로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귀하에게 주어집니다. 따라서
개인사정 등으로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위탁하거나 상속하기 위해서는 상속
개시일로부터 3 개월 이내에 당사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
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상속인이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에 해당
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맹계약은 종료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가능 여부 (조건)	이전 범위	절차	비고
상속	상속인 서면 통지시 가능	모든 권리 의무	서면통지	교육수료 및 교육비 지급
대리행사	본부 승인시 가능	가맹점사업자가 지정한 범위내의 권리의무	서면통지 및 승인	교육수료 및 교육비 지급
업무위탁	불가능	-	-	가맹본부외 제3자의 위탁 경영불가

8. 경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1) 경업금지의 범위

당사는 계약 기간중에 자기 또는 제 3 자의 명의로 당사의 허락 없이 『헬로베트남 쌀
국수』 와 동일한 업종의 영업을 하는 행위를 다음과 같이 금지하고 있습니다.

경업제한기간	경업금지되는 업종	경업제한지역	경업허가절차
계약기간 중	『헬로베트남 쌀국수』과 동일한 컨셉이나 노하우를 사용하는 베트남쌀국수 전문점	국내 전지역	해당사항없음 (문의  (비공개))

- 당사는 귀하가 가맹계약 종료 후 당사의 허락 없이 자기 또는 제 3 자의 명의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헬로베트남 쌀국수』의 영업비밀이 침해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 제한

당사는 『헬로베트남 쌀국수』의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이 제한하고 있습니다.

영업시간	영업일수	비고
자율 (10:00 ~22:00 권장)	월 26일 이상	문의:  (비공개)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5 조 제 10 호에 따라 귀하가 정당한 사유없이 연속하여 7 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가맹계약 해지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권장 종업원 수 및 영업장 근무 여부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의 종업원 및 근무형태의 제한에 있어서 가맹점 및 지역 특성에 따라 그 운영방식이 상이하기 때문에 별도의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권장 종업원수	직접 근무 여부	대체 가능 인력	비고
3 명 이상 [66 ㎡ 기준]	직접 근무 권장	제한없음	가맹점사업자가 매장에 근무하도록 권장하지만 필수적으로 근무하도록 하고 있지는 않음

4)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 · 감독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를 정기적으로 관리, 감독하지 않습니다.

다만, 필요시 매장을 방문하여 청결도, 물품의 사입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9. 광고 및 판촉의 조건과 비용 분담 기준

1)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분담 기준

당사는 『헬로베트남 쌀국수』 브랜드 이미지 제고 및 매출액 증대를 위한 전국 단위의 광고 활동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가맹점사업자와 나누어 부담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광고성격	부 담 비 율		분담 절차	비고
		본사부담	가맹점부담		
광고 전체 행사	상품광고	광고비의 50%	가맹점사업자측 50%(1/N)	행사 계획 공 고 → 가맹점 부담액 제시 → 가맹점의 행사 참여 결 정 → 광고비 납부	1. 대중매체 광고등 광고 에 따라 필요 시 분담 절차 는 변동될 수 있음. 2. 가맹점사 업자 50%이상 반대시 미시행
	상품광고 + 가맹점 모집광고	광고비의 50%	가맹점사업자측 50%(1/N)		
	가맹점 모집광고	광고비의 100%	없음		
판촉 행사	전체행사	행사에 따라 차등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업자측간 균등분담 원칙)		상기와 동일	가맹점사업자 30%이상 반 대시 미시행
	개별행사	가맹점 100%부담		해당없음	가맹점단독 판촉행사

- 지역광고일 경우에는 해당지역내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부담액 부분을 분담합니다.
- 가맹점사업자는 자기의 비용으로 영업지역내 개별 광고 및 판촉행사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도의 절차는 없으나 본사의 승인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는 가맹점사업자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광고나 판촉행사를 실시한 경우 그 집행 내역을 사업연도 종료후 3개월 이내에 가맹점사업자에게 통보하며 가맹점사업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 가맹점사업자의 독자적 광고·판촉 활동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점 영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자기의 비용으로 자기의 영업지역 내에서 당사와 별개로 광고·판촉활동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판촉활동 등을 위한 팸플렛, 카다로그, 쿠폰 등의 내용은 브랜드의 통일성 및 이미지 유지를 위하여 당사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10.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당사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가맹본부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귀하는 계약체결 및 가맹점 운영상 알게 된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을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가맹본부의 허락 없이 교육과 세미나자료 기타 가맹점운영과 관련하여 영업비밀이 담긴 관계서류의 내용을 인쇄 또는 복사할 수 없습니다.

당사의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유출할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1. 가맹계약 위반 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이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약금 및 손해배상에 관한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① 당사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본 계약과 관련하여 계약 위반이나, 일방적인 중도해지 또는 영업중단 등으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입은자는 상대방에게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그 책임있는 상대방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② 가맹점사업자가 본 가맹계약의 제17조(비밀유지 의무) 또는 제18 조(경업금지 의무)를 위반으로 당사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 당사는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위약금 **십이천만원 (₩20,000,000원)**을 청구하거나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가맹점사업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③ 가맹점사업자가 본 계약의 제23조(자점매입)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가맹사업을 경영하는 데 필수적이며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강제)품목

을 자점매입(사입)하여 적발되는 경우,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전월 총매출액의 5%를 위약금으로 청구하거나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가맹점사업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④ 가맹점사업자가 계약해지 및 종료시 제32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그 의무불이행의 기간에 대하여 1일당 10만원의 지체배상금을 당사에 지급하여야 한다.
- ⑤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 또는 그 소속 임원의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해 급격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가맹본부에게 본 계약 상 구제수단 외에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⑥ 가맹점사업자가 제 3자에 대해 책임져야 할 손해배상을 당사가 지불한 경우에는,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⑦ 본 계약의 해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당사와 가맹점사업자가 본 계약상의 특정한 사안에 대하여 손해배상에 대한 합의를 하였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사안에 국한되며, 다른 사안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소멸시키는 것은 아니다.



VI.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1. 가맹점 오픈 절차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 상담일로부터 실제 가맹점이 개설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약 45 일 정도**가 예상되며 필요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내용	소요기간	소요비용
합계	-	45 일 내외	IV.가맹점사업 자의 부담중 1.영업개시 이 전의 부담 1) ~4)를 참고하 시기 바랍니다.
가맹희망자 문의	- 전화문의( (비공개)) - 홈페이지 및 직접방문	D-45	
1 차 상담	- 전화 상담 및 본사방문 상담 -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제공 - 인근 10 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D-44	
점포 개발	- 점포입지 선정 - 점포개발 착수 - 상권분석	필요시 실시	
최종 협의	- 최종 개설 협의	D-30	
가맹계약 체결 및 가맹금예치	- 가맹 계약 체결 - 가맹금 예치	D-29	
점포실측/ 설계	- 매장 내.외부 중심선 기준 실측 / 평수 계산(소수점 첫째자리)	D-28	
도면 작성 및 인테리어 공사	- 인테리어협의 / 별도 / 추가공사 - 인테리어 공사, 설비공사 실시	D-27~2	
교육	- 교육(개점전 교육)	D-6~3	
소품 및 초도물품	- 기자재 및 소품 설치 - 초도물품공급	D-1~2	
오픈	- 영업 시작	D-day	

- 위 표에 따른 소요기간은 평균적인 가맹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협의 과정에서 시장상황 등에 따라 그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 귀하는 본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는 귀하께서 선택하신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에게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등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 분쟁 해결 절차

가맹계약 당사자는 계약의 해석 또는 계약에 의해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 법적 절차에 이르기 전까지 우선적으로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합니다.

대화와 협상으로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할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22 조에 따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연락처: 1588-1490, 홈페이지: <http://www.kofair.or.kr>) 또는 시·도의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해 설치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재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법적 분쟁에 관한 소송은 가맹본부 또는 가맹점사업자의 주소지나 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합니다. 다만, 상호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Ⅶ.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12 조의 2 및 시행령 제 13 조의 2 규정에 의거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맹점사업자의 점포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분담비율 및 구체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세부내역
점포환경 개선 사유	① 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단, 노후화에 대한 객관적인 인정 시점은 최근 개선일로부터 최소 5 년으로 한다.) ② 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 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비용 항목	① 간판교체 비용 ② 인테리어 공사비용 (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 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 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가맹본부 부담비용 비율	①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②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지급절차	①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 내에서 분할지급 가능) ②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 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 본부 부담액을 지급

	<u><분할지급 시 절차></u>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 (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비용부담 제외사유	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비고	집기·장비 교체비용은 가맹본부에서 비용분담을 하지 않음

- 다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12 조의 2 규정에 의거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및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생·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점포환경개선을 하는 경우에는 비용분담을 하지 않습니다.

2.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 내역

당사는 현재 가맹점을 개설 또는 운영함에 있어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이나 지원금의 제공등과 같은 별도의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3. 경영활동 자문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성화를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동에 대한 경영지도를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정책	대상 및 내용	절차	비용 부담	비고
가맹본부 필요시	계약이행, 표준화, 판촉, 경영상 발생문제 등에 대한 경영지도	가맹본부는 가맹점의 경영활성화나 경영지도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가맹점을 방문하거나 유선상으로 관련된 지도를 할 수 있음.	가맹본부 부담	문의:

가맹점 사업자 요청시	계약이행, 표준화, 판촉, 경영상 발생문제 등에 대한 경영지도	가맹점사업자 경영지도 요청 → 가맹본부는 경영지도계획서 (경영지도 내용, 기간, 경영진단 및 소요비용 등 포함)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제시 → 협의후 개별계약체결 → 경영지도 후 [30]일 이내에 가맹 본부 담당자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직접 방문하여 경영지도 결과 및 경영개선방안을 서면으로 제시함을 원칙으로함.	가맹점 부담
-------------------	---	---	-----------

- 가맹점사업자의 요청에 의한 경영지도는 개별 요청사항에 따라 양 당사자의 협의후 개별계약에 의해 결정됩니다. 따라서 자문의 여부, 내용, 구체적인 절차는 개별적인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신용 제공 등 내역

당사는 『헬로베트남 쌀국수』 가맹점사업자를 위하여 신용제공 또는 알선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5.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돕기 위한 자금지원이나 매출부진에 따른 경영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VIII.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1. 교육·훈련의 주요내용

1) 개점 전 교육 프로그램

당사는 『헬로베트남 쌀국수』 운영에 필요한 제반 지식 및 노하우를 귀하에게 전수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개점 전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주요내용	교육방식	기한	비고
조리교육	소고기쌀국수, 닭고기쌀국수 등 메뉴 교육, 주방관리	실습교육	가맹계약 체결 후 1 개월 이내	필수 교육
서비스 및 운영 교육	접객방법, 마인드 교육, 위생교육, 매장운영 등	실습교육	가맹계약 체결 후 1 개월 이내	필수 교육

2) 개점 후 교육 프로그램

당사는 효율적인 『헬로베트남 쌀국수』 가맹점 운영·관리에 필요한 제반지식 및 노하우를 귀하에게 전수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개점 이후 교육·훈련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주요내용	교육방식	교육시간	비고
수시교육	신메뉴 및 필요시 전달교육등	실습교육	1 일(3~6h)	신메뉴출시 및 필요 시
특별교육	점주의 요청에 의한 특별교육	실습 및 강의교육	1 일(3~6h)	가맹점주 요청 시

2.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

귀하가 『헬로베트남 쌀국수』 가맹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최소시간	비용 (부가세 포함)	비고
개점 전 교육	3 일 (21h~24h)	IV-1) 최초가맹금중 교육비 참조	최초 계약시 이수 (1 일 7~8 시간 교육기준)
수시 교육	1 일(2~4h)	기본이론교육무료 실비 발생시 청구	신메뉴 및 필요시등
특별 교육	1 일(2~4h)	개별교육에 따라 가맹점 사업자와 협의 산정	점주요청에 의한 교육

3. 교육·훈련을 받아야 하는 주체

교육·훈련을 받아야 하는 주체는 가맹점사업자와 종업원(관리자 등) 1 인입니다. 다만, 사정에 따라 당사와 사전협의 한 경우에는 타인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맹계약 당사자가 원하여 당사자와 종업원 1 인 이외의 다른 직원에 대한 추가 교육을 희망하는 경우, 인원 추가에 따른 추가 비용을 당사와 협의하여 지불하고 교육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4. 교육·훈련불참시에 받을 수 있는 불이익

교육·훈련을 받아야 할 가맹점사업자 및 매장근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개점 전 교육을 이수하지 못할 경우 개점이 지연될 수 있으며 개점 이후 전체적으로 실시되는 교육에 교육 대상자가 불참할 경우 가맹점운영권 제한 사유 및 계약 갱신 거절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현황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직영점의 명칭 및 소재지

연번	지역	명칭	소재지	비고
			해당없음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

(단위: 년, 개월)

2023 년도 말까지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	비고
해당없음	

3.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및 산정기준

(단위: 년, 개월)

2023 년도 말까지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	비고
해당없음	

정보공개서 내용 문의

- ◇ 이상의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문의 사항이 있거나 정보공개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당사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관련 내용이 궁금하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고객지원담당관실(044-200-4010)** 또는 **가맹거래과(help@ftc.go.kr)**로 문의하십시오. 개별 정보공개서 내용에 관한 문의는 받지 않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이 정보공개서는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 (<http://franchise.ftc.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별첨 1. 재무현황

1. 가맹본부 (플로우(FLOW))

2024년 사업시작



별첨 2. 상품, 원부재료 강제/권장 품목

1. 강제/권장 품목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 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	---

